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유찰을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창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므로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1인 밖에 남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찰 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칠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격·가격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재공고 입찰 결과 참가자가 1인뿐이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유찰되면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부쳐야 하며,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이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회 유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하도록 유권해석 및 회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 및 재공고 입찰을 부칠 때 해당사업의 규격서, 설계서 등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인만 참가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규격서, 설계서를 확정하여 수의 계약한 것은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며, 예정가격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갖추어 두거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야 했다.

1. 경상남도 인터넷 뉴스(○○○○○)콘텐츠 제작 및 운영 부당 수의계약

경상남도 ○○○실에서는 2014. 1. 8. 경상남도 인터넷 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4년 경상남도 ○○○ 뉴스(○○○○○)○○○ 제작 및 운영 용역(사업비 : 123,300천원, 기간 : 2014. 2. 21~2015. 2. 20.)’을 ○○○과에 계약 의뢰하여 2014. 3. 6. (주)○○○○일보사와 수의계약(118,800,000원)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경상남도 ○○○과에서는 2014. 1. 14. ‘2014년 경상남도 ○○○ 뉴스(○○○○○)○○○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지방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 만 입찰하여 재공고 하였으며, 재공고시에도 1개 업체 만 입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 후, ○○○지방조달청에서는 ‘본 입찰은 협상계약으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재입찰 등과 수의계약)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자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경상남도 ○○○과 및 ○○○실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실에서는 적합하다고 답변하여 2014. 3. 6.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지방조달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법·부당하게 관련 법령 검토, 유권 해석 등도 없이 2014. 3. 6. (주)○○○○일보사와 수의 계약(118,800,000원)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1]과 같이 본청 6건에 대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법·부당하게 법령검토, 유권 해석 등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창원 ○○○○○○ ○○상설체험관 제작 설치공사 등 부당 수의계약

창원시 ○○○○과에서는 2014. 10월 창원 ○○○○와 연계하여 ○○○○ ○○ 전시동을 활성화시키고 관람자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로봇 분야의 체험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 ○○상설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공사(착수일로부터 45일간)’를 ○○과에 계약 의뢰하여 2014. 12. 30. (주)○○○○○○과 수의계약(163,930,000원)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창원시 ○○과에서는 2014. 10. 27. ‘○○○○○○○ ○○상설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공사’를 자체 입찰 공고 하였으나, 1개 업체 만 입찰하여 재공고 하였으며, 재공고시에도 1개 업체 만 입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갖추어 두거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야 했다.

창원시 ○○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법·부당하게 관련 법령 검토, 유권 해석 등도 없이 2014. 12. 30. (주)○○○○○○과 수의계약(163,930,000원)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계약금액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원가검토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도 없이 업체의 금액에 의존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과 같이 4개 시·군 8건에 대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 입찰 공고에서 내용 및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의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법·부당하게 법령검토, 유권 해석 등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도 없이 업체의 금액 등에 의존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현황

연번	시군명	사업명	최초입찰일자	유찰	수의계약현황			담당자		비고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본청	2014년 경상남도 ○○○뉴스(○○○○○) ○○○ 제작 및 운영 용역	14.01.14	2회	(주)○○○○ 일보사	118,800	14.03.06	○○ ○○ ○○	211-○○○○	*조달
2	본청	2014경남○○○○○○○○ 사업 용역	14.01.29	2회	○○○○ 전 문학교	117,272	14.03.25	○○ ○○ ○○	211-○○○○	*조달
3	본청	○○○○○○○○ 고도화 사업	14.05.29	2회	(주)○○○○ ○○경남	265,294	14.07.18	○○ ○○ ○○	211-○○○○	*조달
4	본청	○○○○ ○○○○ 및 ○○○○보호 ○○○○ 이행점검 용역	14.07.23	2회	(주)○○○○	267,740	14.09.18	○○ ○○ ○○	211-○○○○	*조달
5	본청	경상남도 ○○○○ 온라인 ○○○○○○○○○ 및 앱개발 용역	14.09.17	2회	(주)○○	38,803	14.10.27	○○ ○○ ○○	211-○○○○	*조달
6	본청	2015경남○○○○○○○○ 사업 용역	15.02.11	2회	○○○○ 전 문학교	112,660	15.04.15	○○ ○○ ○○	211-○○○○	*조달
7	본청	제3회 ○○○○○○○○ ○○○○ 설치운영 용역	15.10.01	2회	주식회사 ○○○○○	39,000	15.10.27	○○ ○○ ○○	211-○○○○	
8	창원	○○○○○○○ ○○상설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공사(협상)	14.10.27	2회	(주)○○○○ ○○	163,930	14.12.30	○○ ○○ ○○ ○○	225-○○○○	
9	창원	○○지구 ○○마을	15.09.	2회	(주)○○○○	63,000	15.11.26	○○	225-	

		○○○○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협상)	23		○○건축사 사무소			○○ ○○ ○○	○○ ○○	
10	창원	○○지구 ○○마을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협상)	15.09. 23	2회	(사)○○○○○ ○○○○○ 센터	42,000	15.11.26	○○ ○○ ○○ ○○ ○○	225- ○○ ○○ ○○	
11	진주	진주 ○○ ○○마을 사업 마스터플랜(MP)수립 용역	15.10. 21	2회	(주)○○○○○ ○건축사사 무소	238,000	15.12.10	○○ ○○ ○○	749- ○○ ○○ ○○	
12	김해	김해시○○○○○○○○○운영 민간위탁용역	13.12. 10	2회	○○○	692,916	14-01-28	○○ ○○ ○○ ○○ ○○	330- ○○ ○○ ○○	2년
13	김해	○○○○○영상물제작방영 용역	15.02. 16	2회	(주)○○○ 경남	117,000	15-03-17	○○ ○○ ○○ ○○ ○	330- ○○ ○○ ○○	
14	김해	○○마을○○문화공원위탁 관리및운영(2016)	16.05. 10	2회	(재)○○○ ○○○○○ 재단	106,800	16-07-26	○○ ○○ ○○ ○○ ○○	330- ○○ ○○ ○○	
15	거창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3.5	2회	(주)○○○○○ ○센터	62,500	15.4.1	○○ ○○ ○○	940- ○○ ○○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진주시장, 김해시장, 거창군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